# 2020년도 첨단제조기업 제조절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제조업 분야의 신규 또는 증설하는 제조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제조설비 투자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4월 27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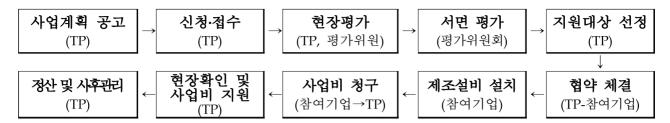
제주테크노파크원장

## 1 사업개요

### ■ 지원 목적

- 신규로 신·증설하는 제조설비의 투자비용을 지원하여, 기업투자 유발
  및 각종 FTA에 대비한 제조생산기반 마련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생산
  및 제주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
- 지원 규모: 4개사 내외
- 지원 조건: 기업 당 50백만원 한도에서 신규 제조설비의 60% 이내 보조
  - \* 기업별 지원규모는 사업비, 소요비용,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차등지원
  - \* 자부담 조건: 소요비용의 40% 이상
- 지원 내용: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또는 증설하는 설비 중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조 설비
  - \* 건축비, 부지매입비, 지게차, 냉동창고 등 생산과 무관한 설비 등은 제외
  - \* 부가가치세, 운반비, 설치비 등은 기업 부담

#### ■ 지원 절차



## 2 신청 자격 및 방법

#### ■ 신청 자격

○ 본사가 제주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기업으로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도입・설치하고자 하는 기업

### ■ 제외 대상

-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 대표자, 과제책임자)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(주관기업, 참여기업 포함)
  - 사업과제책임자가 신청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  - ※ 관련 증빙자료(4대보험가입확인서 등)제출확인 필요(공동참여의 경우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을 포함하여 제출)
  - 신청서에 기재된 과제책임자와 실질적 과제책임자가 상이한 경우
  - ※ 현장평가는 과제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
  - 신청과제가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 동일 유사한 경우
  -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상태에 있거나 주관기업이 비영리법인인 경우
  -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  - 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  -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인 경우 (창업 3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외)
  -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(창업 3년 미만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외)

#### □ 관련근거

O JTP 사업관리요령 제10조(선정평가 제외 대상) 및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제조 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운영지침

- 신청 기간: 공고일로부터 ~ 2020. 5. 12(화) 18:00까지
- 신청서교부: 제주T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(www.jejutp.or.kr)
-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

#### 온라인 신청방법

- (재)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(www.jeis.or.kr)접속
- 대표자(또는 과제책임자) ID/Pass Word로 로그인 (필요시 회원가입)
- 상단 좌측메뉴에서 '지원사업' ⇨ '해당사업(접수중)' 클릭 ⇨ '사업신청 ' 클릭
- 상세화면으로 이동 ⇨ 각 항목 입력/저장 ⇨ 신청서 파일 업로드 ⇨ '등록' 클릭

## ■ 제출 서류

① 신청서 5	및 사업계획서(별지1,	2호)	1부	(원본)
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	----	------

②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별지3, 3-1호) 1부

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

④ 구입예정 제조설비 카탈로그 1부

⑤ 견적서(금액, 설명서 포함) 1부

⑥ 최근 3년간 재무제표1부

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

⑧ 가점부여 관련 인증서류(해당시) 1부 (가점부여 항목 참조)
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## 3 선정절차

### ■ 평가방법

 접수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를 바탕으로 2차에 걸친 평가과정을 통해 합산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% 종합평점 =  $(서류 \cdot 현장평가점수 \times 0.5 + 서면심사 점수 \times 0.5) + 가 · 감점$ 

#### <가점 및 감점>

○ 가점: 아래 각호와 관련하여 최대 2개까지만 가점을 인정

연번	우대 사항	가점	확인
1)	기술·경영 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, 특허 보유기업	0.5점	인증서
2	여성기업, 장애인기업	0.5점	확인서류
3	수출 유망 중소기업 또는 수출중소기업	0.5점	인증서 또는 증빙서류
4	가족친화인증기업	0.5점	인증서 또는 증빙서류

○ 감점: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사항 확인 후 적용

연번	감점 사항	감점
1	최근 3년 내 동 사업에 선정 지원된 업체	5점
2	공공기관의 R&D 지원 사업 중 2년 이내 중단,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의 주관기업 또는 사업주	2점
3	공공기관의 R&D 지원 사업 중 2년 이내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업 또는 사업주	1점

\* <u>종합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여도, 개발 가능성, 사업</u> 계획타당성, 기술성 순으로 선정

### ■ 평가항목

- 서류·현장평가(4항목)
  - · 추진역량, 인프라 여건, 개발능력(제품화, 마케팅), 기업역량
- 서면평가(4항목)
  - · 기술성, 개발가능성, 사업계획타당성, 경제기여도(수출 및 일자리 창출)

## 4 문의 처

기 관 명	전 화	담당자	비고
기업지원단 사업화지원팀	064)720-3056	진경희 선임연구원	사업내용 문의
기업지원단 성장기획팀	064)720-3077	김경태 연구원	사업등록 문의